

<p>조문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세번째, 주요골자는 第8條에 專門委員의 分掌事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第7條의 議案擔當官의 분장사항 중 일부를 削除 또는 新設하여 적절히 조정하였으며, 委員會의 所屬 公務員 7급 11명과 事務補助員 10명을 增員하였고 기타 編輯要員 4名, 速記要員 5名, 地方機成員 1名 등 總 31名이 增員되었고 事務局은 事務處로 事務局長은 事務處長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게 그 主要骨子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委員長 金寅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p> <p>○專門委員 梁在大 안녕하십니까? 專門委員입니다.</p> <p>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提案背景, 提案理由, 主要骨子は 提案說明에서 자세히 言及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檢討意見만 말씀드리겠습니다.</p> <p>첫째, 專門委員의 職務가 명기되어 議案擔當官과의 業務分掌의 한계가 어느 정도 명확화되어 마찰이나 갈등의 소지는 줄어들었다고 하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事案에 따라서는 업무영역에 대한 마찰 또는 책임 회피의 소지는 있다고 보며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p> <p>두번째, 이번 事務局設置條例의 改正으로 상임위원 專門委員 傘下에 職員 1名과 事務補助員 1名이 增員되도록 되어 있어 專門委員의 업무수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안, 최소한의 적정한 人員이 增員되어야 委員會活動 보좌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긍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p>참고로 國會의 專門委員과 市議會 專門委員은 責任의 比重과 業務量 등의 면에서 水平的, 平面的 比較가 어려우나 國會 專門委員室에는 최소 10名에서 20名 수준의 人員이</p>	<p>配置되어 있습니다.</p> <p>셋째, 地方自治法 第64條第1項 및 同法 施行令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거 신속 精確한 회의록 발간, 배포,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編輯, 速記要員의 絶對不足으로 시의적절한 會議錄 發刊, 配布에 차질을 빚어온 형편이었으나 금번에 編輯要員 4名, 速記要員 5名이 增員되어 다행이며, 향후에도 업무량을 감안 적절한 人員 配定 또는 用役 活用 등을 통해 會議錄 配布의 迅速 正確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p>넷째, 地方自治法 改正案이 12月 17日 國會 本會議를 통과되어 政府에서의 公布 節次만 남아 있는 상태로 事務局設置條例中 關聯條項의 條文整理는 일응 시기상조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보이나 條文整理의 대상이 되는 關聯規定은 爭點事項이 없고 上位法의 改正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에 불과하고 條例의 公布時期를 조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委員長 金寅東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p> <p>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實務協議를 거쳤던 事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整理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p> <p>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의 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러면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조례 제 호</p> <p>서울특별시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p>
---	---

정한다.  
제2조의 제명, 등조 제1항, 등조 제2항, 제3조 제1항 및 제4조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4항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등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호중 “의안업무 조정”을 “의안업무의 진행조정”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등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회 의사일정 종합·통지, 회의 준비 및 의사진행 지원
3. 진정서의 처리
4.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심사자료의 접수, 이송
5.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2.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3. 의안·청원관련 자료의 수집, 연구·검토
4. 소관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제4조 관련[별표] 일반직 직급란중 “2·3”을 “1”로 하고, 등 정원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을 “지방관리관”으로하며, 일반직 7급정원란 “13”을 “24”로 하고, 등 정원 내용란의 지방행정주사보 “11”을 “22”로 하며, 일반직 정원란의 “57”을 “68”로 한다.

별정직 5급란 다음에 7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4	지방별정직 7급 상당(편집요원 2, 속기요원2)
---	---	----------------------------

별정직 8급정원란 “1”을 “10”으로 하고, 등 정원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별정직 8급상당(의장비서 1, 편집요원2,

속기요원7)

별정직8급란 다음에 9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별정직 소계란 “4”을 “21”로 한다.

9	4	지방별정직 9급 상당(속기요원) 4
---	---	---------------------

기능직 8등급 정원란 “7”을 “3”으로 하고, 등 정원내용란의 “지방사무보조원(조무)4”를 삭제한다.

기능직 9등급 정원란 “4”를 “2”로 하고, 등 정원내용란의 “지방사무보조원(조무) 2”를 삭제한다.

기능직 10등급 정원란 “36”을 “45”로 하고, 등 정원내용란의 지방기계원 “1”을 “2”로 하고, 지방사무보조원(조무) “10”을 “18”로 하고, 기능직 소계란 “52”를 “55”로 하며, 총계란 “113”을 “11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원	정 원 내 용
일 반 직	1	1	관리관
	4	13	지방서기관 3,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4급 상당 10
	5	9	지방행정사무관 8, 지방기계기좌, 지방전기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1
	6	15	지방행정주사 13, 지방통신기사 1, 지방임업기사1
	7	24	지방행정주사보 22, 지방건축기사보 1 지방기계기사보 또는 지방전기기사보 1
	8	6	지방행정서기 5, 지방사서서기 1
	소계	68	
별 정 직	4	1	별정직 4급상당(의장비서관) 1
	5	2	별정직 5급상당(부의장비서관) 2
	7	4	별정직 7급상당(편집요원 2, 속기요원 2)
	8	10	별정직 8급상당(의장비서 1, 편집요원 2, 속기요원 7)
	9	4	별정직 9급상당(속기요원) 4
소계	21		
기 능 직	6	2	지방기계장 2
	7	3	지방기계장 1, 지방전기장 1, 지방통신장 1
	8	3	지방기계원 1, 지방기계원(영사)1, 지방전기원1
	9	2	지방교환원 1, 지방운전원 1
	10	45	지방기계원 2, 지방전기원 1, 지방통신원 1, 지방기계원 또는 지방전기원 2, 지방건축원 2, 지방사무보조원(조무) 18, 지방사무보조원(타자) 8, 지방방호원 7, 지방운전원 4
소계	55		
총 계		144	

新·舊 條文 對備表

現 行	改 正 (案)
제2조(사무국) ①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 ①..... ..... ... 사무처를 .....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 ..... ③사무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한다

現 行	改 正 (案)
<p>④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3조(하부조직) ①사무국에 의정과와 의사과 및 의안담당관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p> <p>②..... (생략) .....</p> <p>제4조(직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p> <p>제7조(의안담당관) 의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안문서의 정리·보존·관리 및 의안업무 조정</li> <li>2. 운영위원회, 내부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생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및 교통위원회 소관사항 자료조사 및 의안정리</li> <li>3. 청원·진정 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li> <li>4. 소관위원회 행정업무 및 회의진행 지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8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p>	<p>④사무처장 .....</p> <p>.....</p> <p>.....</p> <p>제3조(하부조직) ①사무처에 .....</p> <p>.....</p> <p>②(현행과 같음)</p> <p>제4조(직원의 정원) 사무처 .....</p> <p>.....</p> <p>제7조(의안담당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위원회 의사일정 종합·통지, 회의 준비 및 의사진행 지원</li> </ol> <p>3. 진정서의 처리</p> <p>4.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심사 자료의 접수 이송</p> <p>5.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일반행정업무의 지원</p> <p>제8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li> <li>2.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li> <li>3. 의안, 청원 관련자료의 수집, 연구·검토</li> <li>4. 소관위원회 지시사항 처리</li> </ol> <p>제9조(직원의 파견요청)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지방법공무원정원표

[별표]

직	급	정원	정원	내	용	정원	정원	내	용
일	1	1	1	관리관		2,3	1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4	13	13	지방서기관 3,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4급 상당 10		4	13	지방서기관 3,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4급 상당 10	
	5	9	9	지방행정사무관 8, 지방기계기좌, 지방전기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 1		5	9	지방행정사무관 8, 지방기계기좌, 지방전기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 1	
	6	15	15	지방행정주사 13, 지방통신기사 1, 지방임업기사 1		6	15	지방행정주사 13, 지방통신기사 1, 지방임업기사 1	
	7	24	24	지방행정주사보 22, 지방건축기사보 1, 지방기계기사보 또는 지방전기기사보 1		7	13	지방행정주사보 11, 지방건축기사보 1, 지방기계기사보 또는 지방전기기사보 1, 지방사서서기 1	
직	8	6	6	지방행정서기 5, 지방사서서기 1		8	6	지방행정서기 5, 지방사서서기 1	
	소계	68				소계	57		
별	4	1	1	별정직 4급상당(의장비서관) 1		4	1	별정직 4급상당(의장비서관) 1	
	5	2	2	별정직 5급상당(부의장비서관) 2		5	2	별정직 5급상당(부의장비서관) 2	
	7	4	4	별정직 7급상당(편집요원 2, 속기요원 2)		8	1	별정직 8급상당(의장비서관) 1	
	8	10	10	별정직 8급상당(의장비서관 1, 편집요원 2, 속기요원 7)		소계	4		
기	6	2	2	지방기계장 2		6	2	지방기계장 2	
	7	3	3	지방기계장 1, 지방전기장 1, 지방통신장 1		7	3	지방기계장 1, 지방전기장 1, 지방통신장 1	
능	8	3	3	지방기계원 1, 지방기계원(영사)1, 지방전기원 1		8	7	지방기계원 1, 지방기계원(영사) 1, 지방전기원 1, 지방사무보조원(조무) 4	
	9	2	2	지방교원 1, 지방운전원 1,		9	4	지방교원 1, 지방운전원 1, 지방사무보조원(조무) 2	
직	10	45	45	지방기계원 2, 지방전기원 1, 지방통신원 1, 지방건축원 또는 지방전기원 2		10	36	지방기계원 1, 지방전기원 1, 지방통신원 1, 지방건축원 또는 지방전기원 2	
	소계	55				소계			
총	계	144				총	계	113	